

4.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및 제52조에 의거하여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에 따르되, 학업성적, 출결상황 및 미등록 등의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포상 또는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4. 지도교수의 포상추천을 받은 학생

제4조(포상의 발의) 위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상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휘할 수 있다. (2019.2.8.개정)

- | | |
|-------------|----|
| 1. 공적조서 | 1부 |
| 2. 지도교수 추천서 | 1부 |
| 3. 책임교수 의견서 | 1부 |

제5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교의 입교정신을 위배한 학생
2.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3. 타학생에게 학생지도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4.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한 학생
5.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학생
6.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6조(징계의 발의) 위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상벌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2019.2.8.개정)

- | | |
|------------------------------|----|
| 1. 사건경위서 | 1부 |
|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 1부 |
| 3. 지도교수 및 책임교수 의견서 | 1부 |

제7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학기,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책임교수의 지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적처분을 한다.

제9조(심의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대상자

가. 학생지원처장은 포상대상자로서 제3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2.8.개정)

나. 학생지원처장은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학과에 통보하고 총장에 품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9.2.8.개정)(2020.4.21. 개정)

2. 징계대상자

가. 학생지원처장은 제5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6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2019.2.8.개정)

나. 학생지원처장 또는 상벌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2019.2.8.개정)

다. 학생지원처장은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학과에 통보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2.8.개정)(2020.4.21. 개정)

제10조(징계의 해제) 지도교수로부터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결과보고서와 징계 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되면 학생지원처장은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2019.2.8.개정)(2020.4.21. 개정)

제11조(통보) 포상은 공개하되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지원처장은 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과장, 학생지원처장 및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19.2.8.개정)(2020.4.21. 개정)

제12조(유보)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벌분과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결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